

인천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213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유병일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원
담당변호사 문슬기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은 10,728,8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28,8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행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2020. 10. 20. 소외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9,5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20. 10. 20.부터 2025. 10. 20.까지, 채권자를 C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액을 9,500,000원, 보증기한을 2025. 10. 20., 대출예정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B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2020. 10. 22. B의 매출부진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2.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9,582,781원(= 원금 9,500,000원 + 이자 82,7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2021. 3. 3. 인천지방법원 2021차전1063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4. ‘B은 원고에게 9,582,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21. 4. 2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고가 위 지급명령으로 인정받은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B은 2020. 11. 5.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84071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2020.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D조합, 주식회사 E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9,314,91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92,000,000원 - D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2,685,090원 -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00,000원)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인 10,728,8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728,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0. 10. 22. B의 매출부진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인 2021. 2. 15. 원고가 B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B과 피고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도 없었다.

② 피고는 공인중개사 F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B의 요청에 따라 법무사 G에게 22,759,522원, 공인중개사 F에게 17,240,478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4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 F에게 중개비용 24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과정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 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들인 인테리어의 비용 및 노력,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가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염가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부분 외에 B의 채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D조합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정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즉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B의 신용상태나 사해행위성 등을 의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B과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법적 분쟁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

별지